

제2장 금융소득

제1절 금융소득의 범위

1. 이자소득

- ① 채권·증권의 이자와 할인액
- ② 예금의 이자
- ③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(만기 10년 미만)
-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(1999.1.1 이후 최초로 직장공제회에 가입)
- ⑤ 비영업대금의 이익
- ⑥ 위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

※ 각종 보험차익의 과세방법

구분		과세여부
소득 세법	저축성보험	10년미만의 단기저축성 보험 차익: 이자소득으로 과세 그외는 소득세 과세 안함
	보장성보험	피보험자의 사망, 질병, 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차익: 소득세 과세 안함
법인 세법	자신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한 보험차익	거주자가 사업자: 사업용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험차익인 경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
		그 외는 소득세 과세 안 함.
법인 세법	구분없이 모두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	

※ 비영업대금

자금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시적·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것
비영업대금이익(사업성이 없는 경우): 이자소득으로 과세

cf. 사업성이 있는 경우 대금업이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.

※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

구분	비고
①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	단, 소비대차 전환분은 이자소득임
② 매입에누리 또는 매일할인	사업소득인 경우 매입에서 차감
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받는 금액,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통상적인 방법보다 더 지급받는 금액	사업소득으로 과세
④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	기타소득에 해당. 그외 배상금(명예 훼손 배상금이나 교통사고 배상금 등) 및 법정이자는 소득세 과세 안 함.

2. 배당소득

- ①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
- ② 인제 배당 (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수령한 무상주와 감자·해산·합병으로 인한 이익)
- ③ 인정배당(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)
- ④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(펀드)로부터의 이익
- ⑤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(유형별 포괄주의:신중펀드의 배당 등)

제2절 금융소득의 수입시기

1. 이자소득의 수입시기

구분		수입시기
채권·증권의 이자와 할인액	무기명 채권 등	그 지급을 받은 날
	기명 채권 등	약정에 의한 지급일
	채권 등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	약정에 의한 환매수일·환매도일. 다만, 기일 전에 환매수·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
보통예금·정기예금·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	원칙	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
	원본 전입의 특약이 있는 이자	특약에 의한 원본전입일
	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	그 해약일
	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	그 연장하는 날
	통지예금의 이자	인출일

구분		수입시기
채권·증권의 이자와 할인액	무기명 채권 등	그 지급을 받은 날
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		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. 다만, 기 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
비영업대금의 이익	원칙	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
	약정이 없거나, 약정에 의한 지 급일전에 이자를 받는 경우	이자지급일
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재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 는 경우		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
유형별 포괄중의에 따른 이자소득		약정에 의한 상환일. 다만, 기일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일

2. 배당소득의 수입시기

구분		수입시기
일반적인 배당	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이익배당	잉여금 처분결의일
	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	실제 지급을 받은 날
	출자공동사업자 배당	과세기간 종료일
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(인정배당)		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 일(보통 주주총회일)
인제배당	무상주 인제배당(잉여금 자본전입)	자본전입 결의일
	감자(퇴사·탈퇴)시 인제배당	감자 결의일(퇴사·탈퇴일)
	해산 시 인제배당	잔여재산가액 확정일
	합병·분할시 인제배당	합병·분할 등기일
집합투자기구	원칙	이익을 지급받은 날
로부터의 이익	원본에 전입의 특약이 있는 경우	원본전입일